

 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21.2.1.(월) 조간부터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담 당 자	양 재 훈 사무관 (02-2100-2661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주 현(02-3145-6700)		서 재 완 팀장 (02-3145-6710)
	거래소 유가본부 본부장보 송 영 훈(02-3774-8505)		이 성 길 부서장 (02-3774-9360)
	금융투자협회 부문대표 신 동 준(02-2003-9022)		김 재 욱 부장 (02-2003-9200) 박 상 철 부장 (02-2003-9240)

제 목 :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개최

“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「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」 발표”

- 금융위는 '21.1.29.(금)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개최하여 '21년 업무계획 중 「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」 등의 세부안을 논의·발표
- 「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」은 ① 운용, ② 판매, ③ 상품, ④ 투자자 지원 인프라 등 전반에서 투자자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점
 - ① 운용사-투자자간 펀드성과 공유를 확산하여 책임운용을 유도하고, 탄력적인 펀드운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
 - * 운용사의 공모펀드 자기재산투자(시딩투자)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,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도입, 비활동성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 제고 등
 - ② 투자자 관점의 펀드판매 유도 및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판매 활성화
 - * 판매보수 경쟁제고 및 성과연동형 판매보수·수수료 허용 등 판매보수·수수료 체계개편안 마련,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도입 등
 - ③ MMF, ETF, 실물펀드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의 다양화
 - * 외화표시 MMF 도입, 주식형 액티브 ETF('20.7월 도입) 및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허용, 환금성을 제고한 실물공모펀드(기간환급 펀드) 도입 등
 - ④ 투자자의 펀드선택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 강화
 - *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·데이터 형태로 제공, 판매사별 판매펀드 성과공시, 재간접펀드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,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

I.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개최 개요

- 금융위는 '21년 업무계획중 자본분야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'21.1.29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이번 회의에서는 「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」과 「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*」을 중점적으로 논의·확정하였습니다.

※ 「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」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

※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1.1.29.(금) 10:00 / 영상회의
- 참석자 :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위원(김이배 분과위원장 주재), 금융위 (자본시장국장), 금융연, 자본연
- 논의내용 : '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자본시장 중점과제 상세방안
 - 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
 - ②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

II.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

1 추진배경

- 공모펀드는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중위험·중수익 추구에 적합한 일반국민의 전통적인 자산운용수단입니다.
- 그러나, 공모펀드의 성장이 정체*된 가운데, 특히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에 대한 선호가 크게 저하**되었습니다.

* 공모펀드 규모(조원) : ('10) 198.6 → ('15) 213.8 → ('19) 242.3 → ('20) 274.7
- MMF 제외시 : ('10) 133.6 → ('15) 127.7 → ('19) 168.3 → ('20) 172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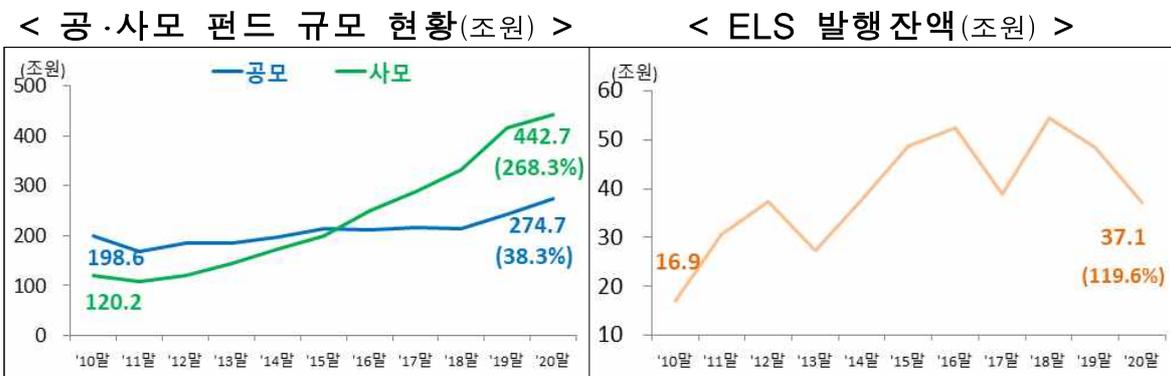
** 공모펀드 개인투자자 잔고비중(%) : ('15) 51.0 → ('19) 47.6 → ('20) 41.5

- 특히, 최근 국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, DLF·사모펀드 사태, 공모펀드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공모펀드 등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입니다.
- ⇒ 전문가에 의한 운용, 분산투자 등의 장점이 있는 공모펀드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재산증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.

2 공모펀드 현황진단

1. 공모펀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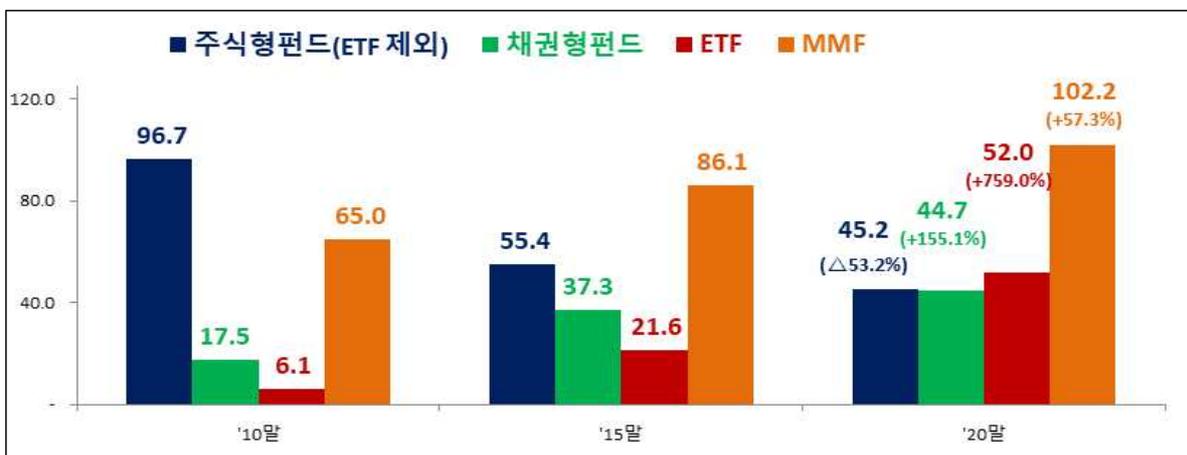
- 최근 약10년('10.12.~'20.12.)간 사모펀드·ELS 등 경쟁상품이 크게 성장(+268.3%, +119.6%)하였으나, 공모펀드의 성장은 미미(+38.3%)합니다.



- 공모펀드 유형별로는 주식형펀드(ETF제외) 규모는 감소(△53.2%)한 반면, ETF¹⁾·MMF²⁾ 규모는 증가(+759.0%, +57.3%)하였습니다.

- * 1) 낮은 수수료·보수, 거래 용이성 등이 주요 증가 요인
- 2)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의한 안전자산 수요 확대에 최근 크게 증가

< 공모펀드 유형별 규모 추이 >



2. 공모펀드 성장정체의 원인

- ① (운용성과 미흡) 그간 중장기적으로 공모펀드의 운용성과가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.

< 공모펀드·예금 연간 수익률 비교 (단위 : %) >

구분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	'18	'19	평균('10~'19)
공모펀드(A)	10.4	△7.6	7.7	2.7	0.7	2.3	1.3	10.3	△6.1	6.8	2.7
예금(B)	3.6	4.0	3.5	2.8	2.5	1.8	1.5	1.7	2.0	1.8	2.5
차이(A-B)	6.8	△1.5	4.2	△0.2	△1.7	0.5	△0.3	8.7	△8.1	5.0	0.2

* A : 공모펀드 수익률(보수 차감) / B : 1년 정기예금 이자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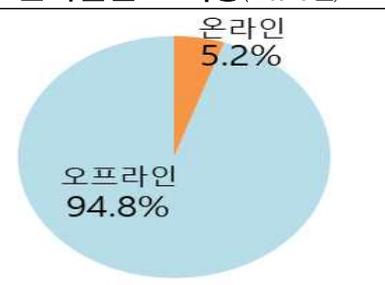
- 한편, 그간 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노력이 지속*되었으나, 보다 탄력적인 펀드운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요청도 있습니다.
- * 분산투자 등 전반적인 국내 공모펀드 운용규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
- ② (판매채널 신뢰저하) 판매채널간 차별화가 부족하고, 투자자 입장의 판매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

- 특히, 은행·증권사 창구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채널, 적합한 상품추천이 가능한 자문채널은 미미합니다.

< 판매채널별 판매잔고 비중('20.9월) >



< 온라인펀드 비중('20.10월) >



- ③ (상품 다양성 부족) 투자수요 다변화에 따라 MMF·ETF·실물투자* 등 투자자 수요가 큰 상품의 다양화 요구가 있습니다.

* 환금성이 낮고, 신속한 투자자금 모집이 필요한 실물투자 특성상 대부분 (약 97%) 실물펀드는 사모펀드로 운용 중

- ④ (투자자 지원 필요) 펀드선택과 관련한 투자자의 어려움이 크며*, 복잡한 펀드구조, 비유동자산 투자확대 등에 따라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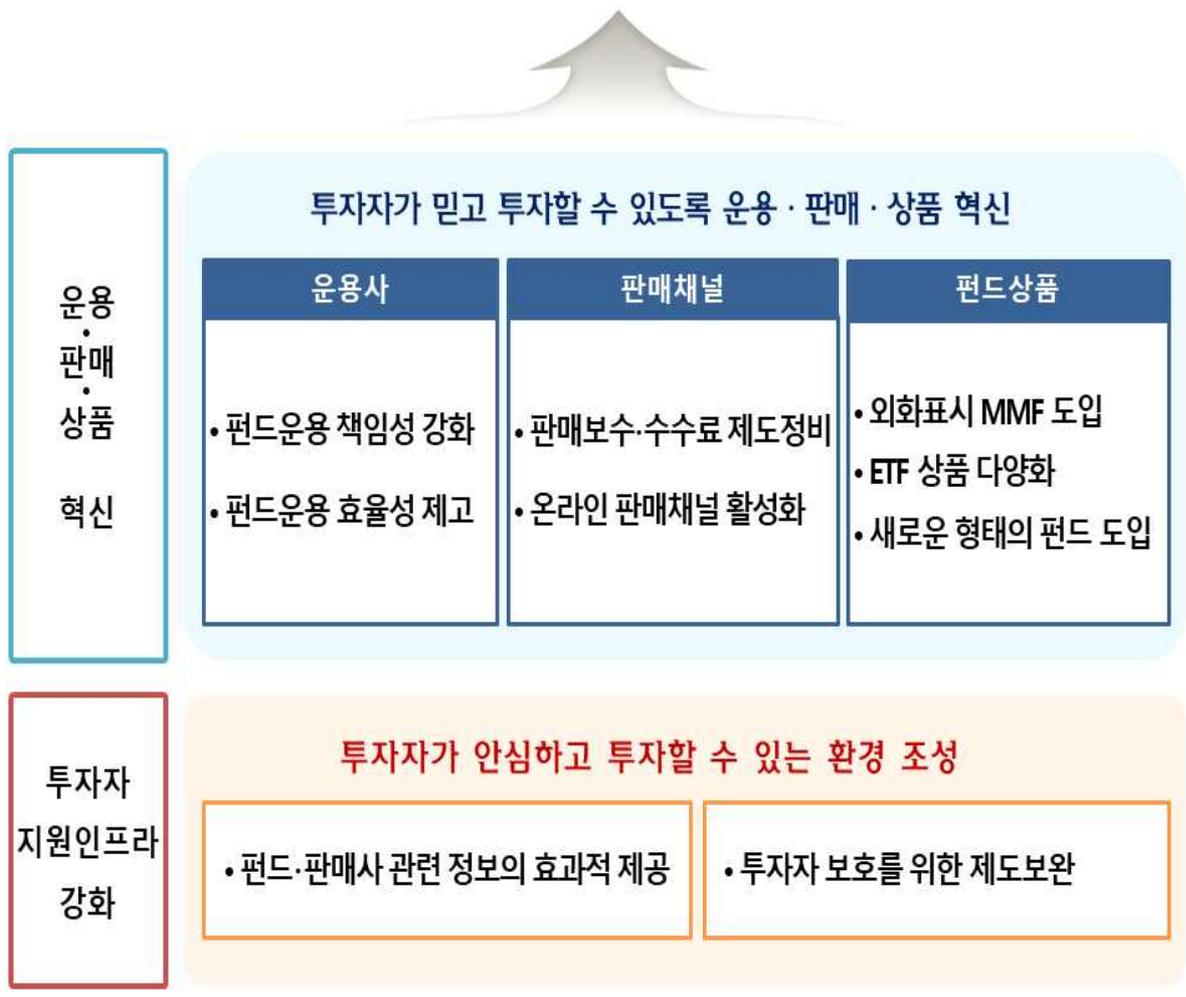
* 펀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투자자 비중 80.2%['20년 투자자보호재단설문]

3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추진방안

〈 기본 방향 〉

- ◆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표적 국민재산증식 상품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변화를 추진
 - 합리적인 수익률·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사·판매채널·펀드상품 혁신
 -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, 투자자보호 제도 등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

공모펀드 재도약으로 국민 재산형성과 자본시장 발전 지원



[추진전략 I] 펀드운용의 책임성·효율성 제고

① (책임성) 운용사의 ①펀드 자기재산 투자(시당투자)제도*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, ②성과보수펀드의 새로운 형태를 도입합니다.

*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, 3년 이상 투자(행정지도)

① 자기재산 투자 관련 소형운용사 부담을 합리화*하고, 투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**를 도입하겠습니다.(행정지도 법제화 추진)

* 소형 운용사(예 : 수탁고 1조원 이하)에 대해 투자금 분할납입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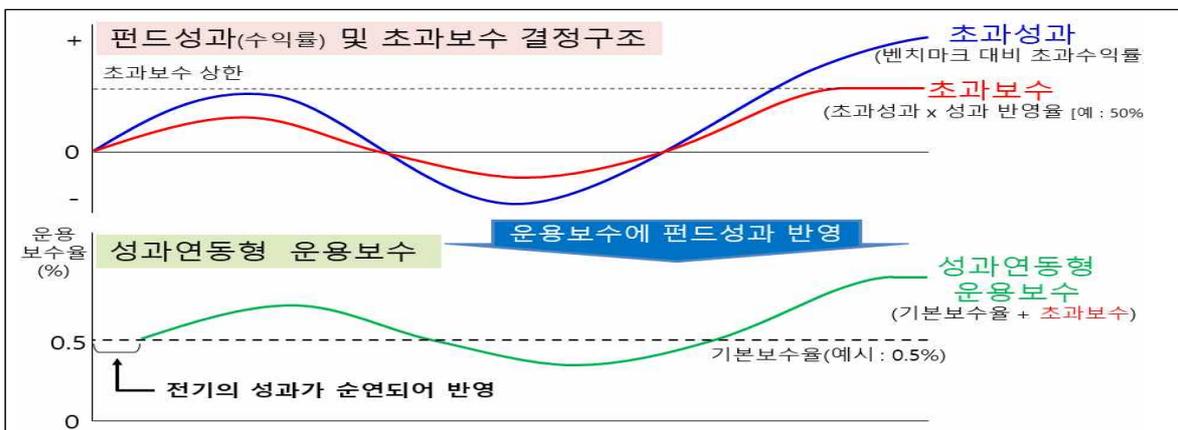
** 예) 자기자본의 1%(단, 최소·최대 설정) 이상 투자시 소규모펀드 판단기간 연장(설정후 1 → 2년), 분산투자한도 초과시 해소 유예기간 완화(3 → 6개월)

② 성과보수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성과보수펀드 유형외에 '성과연동형 운용보수' 유형을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.

-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펀드운용성과(예 :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·손실)에 연동하여 운용보수가 변경되는 구조*입니다.(운용보수 외의 별도 성과보수는 미수취)

* 일반펀드 수준의 기본보수 수취가 가능하며, 운용성과에 따른 보상(+). 불이익(-)이 정기적으로 운용사에 제공·부과

<성과연동형 운용보수 구조 (예시)>



- 전기의 운용성과가 순연되어 반영되는 구조로 단기투자 보다 장기투자에 적합하며, 투자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.

② (효율성) ①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용이성을 제고하고, 펀드 운용 규제를 지속 정비하여 ②효율적인 펀드운용을 지원합니다.

① 비활동성 펀드는 운용사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을 허용*하겠습니다.

* (개선안 예시) 설정 후 10년이상 경과 및 최근 3년간 일평균 수탁고 50억원 미만인 펀드는 투자자의 반대의사 표시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허용

- 소규모펀드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*의 법제화도 추진합니다.

* 소규모펀드(설정 1년후 50억원 미만 펀드 등) 비율이 5%를 초과하는 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등록 제한

② 펀드간 규제차익 해소, 운용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정비*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
※ 규제개선 과제

① 공모펀드가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를 100% 편입하는 것 허용

② 부동산·특별자산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에 SOC사업관련 특수목적법인(SPC)에 투자하는 펀드 포함*

* 투자구조 예시 : (현행) '부동산·특별자산재간접펀드 → SOC펀드 → SOC' 만 허용
(개선) '부동산·특별자산재간접펀드 → SOC펀드 → 특수목적법인(SPC) → SOC'도 가능

③ 환매금지형펀드 추가설정시 기존투자자 실권부분의 타투자자 판매허용

[추진전략 II]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 구축

① (판매보수·수수료 제도정비) 경쟁제고 및 투자자 중심 판매를 위해 ①판매보수·수수료 체계개편(안)을 마련하고, ②투자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합니다.

① 서비스 차별화, 투자자 인지가 곤란한 현행 판매보수 체계를 개선하고, 판매사와 투자자간 투자성과 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.

※ 연구용역·업권TF 구성을 통해 '21.상반기 중 개편안 확정

※ **개편방향(안)**

- **현행 방식*외에도 판매사가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투자자에게 판매보수를 직접수취하는 방식 허용**

* 운용사가 단일율로 설정하고 펀드재산에서 판매사로 지급

< 신규방식 도입시 기대효과 예시 >

구분	현행	개선	효과
보수 지급	펀드 → 판매사	투자자 → 판매사	■ 투자자의 판매보수 인지 명확화 → 판매사별 서비스에 부합하는 보수율 결정
보수율 결정	운용사	판매사	■ 다양한 형태의 보수율·서비스* 출현 → 투자자 입장에서 보수율 경쟁 강화 * 예) 펀드 추가 가입시 보수율 할인, 유사펀드 대비 수익률 현황비교 서비스 등

[해외사례] 영국은 투자자와 판매채널(자문사·플랫폼[판매사])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판매보수의 운용사(펀드)로부터 수취 금지('12.12월~)

- **투자자·판매사간 ①이해일치 및 ②과도한 성과추구 방지 등 일정요건* 충족시, 성과연동형 판매보수·수수료 허용**

* ① 예) 추천펀드만 성과연동 허용, 성과연동펀드의 성과를 정기적 검토 등
② 예) 성과보수 상하한, 투자손실시 수수료·보수를 환급하는 대칭형 구조 등

② **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보수·수수료 수취방식을 설명*하도록 하고,**

*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수수료 수취형이 미수취형에 비해 장기 투자에 유리하나, 실제 투자기간은 수취형이 미수취형에 비해 짧은 경향

- **온라인 및 판매수수료 선취(A클래스)·미수취(C클래스) 펀드 설정을 의무화*하겠습니다.**

* 각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 펀드 비중(펀드수 기준, '20.7월)
: (판매수수료 선취형) 31.1%, (판매수수료 미수취형) 26.2%, (온라인) 25.2%

② **(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) ①온라인 투자자문 활성화, ②기존 온라인 채널 기능강화 등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.**

① 「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」 도입(코스콤)을 통해 자문사의 자문대상 펀드확대* 및 후선업무(계약관리, 보고서 생성 등)를 지원하겠습니다.

* 통상 자문사는 2~3개 증권사와 계약하여 해당 증권사 상품으로만 자문
 →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증권사와 계약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자문 가능

<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구조 >



② 온라인펀드슈퍼마켓·직판 채널의 기능을 강화*하고, 모바일·온라인 펀드가입의 편의성을 제고**하겠습니다.

* 온라인펀드슈퍼마켓의 투자일임업 겸업, 직판사 온라인판매시스템 구축 등

** 모바일전용 투자설명서 도입, 온라인상 불명확한 판매행위 규제 명확화

[추진전략 III] 다양한 공모펀드 출현 유도

① (외화표시 MMF 도입) 수출기업 등의 외화운용 지원을 위해 외화표시 MMF*를 도입합니다.

* 단기채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로 외화로 납입·환매금 지급

○ 외화표시 MMF의 통화는 OECD국·중국 등 통화(단, 단일통화)로 제한하고, 원화 MMF 수준의 규제*를 적용할 계획입니다.

*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등 투자한도(0.5~5%), 편입자산 신용등급(최상위·차상위 이상)·가중평균잔존만기(75일 이내) 등 (단, 신규MMF 설정요건은 1/2수준으로 완화)

< 외화표시 MMF 개념 >



② (ETF 상품 다양화) 주식형 액티브ETF*('20.7월 허용)의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, 다양한 ETF 출현을 유도합니다.

* 비교지수와 ETF 순자산가치 변동율간 상관계수 요건을 완화(0.9 → 0.7)한 ETF(채권형 액티브 ETF는 '17년 도입 → '20.12월 기준, 11개·2.1조원)

① 주식형 액티브ETF는 해외의 제도개선 경과(예 : 자산구성내역 [PDF] 일단위 공개 완화) 등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.

② 채권형 ETF에 대해 만기가 있는 ETF 출시를 허용하겠습니다.

③ ETF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*하여 혼합형(주식+채권) ETF의 출시를 보다 용이하게 하겠습니다.

* (현행) 채권은 종목수 10종 이상, 채권외는 종목수 10종 이상[⇒ 혼합형은 최소 20종 필요] → (개선) 자산유형과 관계없이 10종 이상[예 : 채권 5종 + 주식 5종]

③ (새로운 형태의 펀드 도입) 일반투자자의 실물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금성 및 운용 탄력성을 높인 펀드를 도입합니다.

① 펀드재산의 일정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기회를 제공*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를 도입(가칭 '기간환급 펀드')하겠습니다.

* 예) 매분기 펀드재산의 10% 한도내에서 투자자 신청을 받아 환매

[미국사례] 유사한 성격의 '인터벌펀드' 제도 운용(약 \$270억 규모, '18년)

② 투자대상·펀드종류의 변경*이 가능한 펀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.

* 예) 설정후 초기에는 채권 등에 운용 → 펀드규모 확대후 SOC펀드로 전환

[추진전략Ⅳ] 투자자 지원인프라 강화

① (정보 제공) 펀드 ①비교·분석 서비스 활성화 및 ②판매사 판매펀드 성과의 용이한 확인을 위해 공시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합니다.

① 금투협회의 펀드 공시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핀테크 업체, 판매사 등에 제공하여 투자자에 대한 펀드 비교·분석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.

② 투자자가 판매사 선택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금투협회에서 판매사별 판매펀드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 정보*를 공시할 계획입니다.

* 판매사별로 판매한 펀드의 평균수익률, 수익률 변동성 등

② (투자자 보호) ①재간접 펀드, ②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보호 제도를 보완합니다.

①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* 정보 등을 ①투자설명서·②자산운용보고서·③펀드영업보고서**에 기재하게 하겠습니다.

* 예) 공모펀드 → 해외펀드 → 해외채권 투자구조 : 해외채권이 최종 기초자산

** ①·② 투자자에 제공 / ③ 금융당국에 제출

② 개방형 펀드에 대해 ①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*를 실시하고, ②유동성 위험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를 강화**하겠습니다.

* 연1회 이상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마련('20.4월 사모펀드 대책과 병행 추진중)

** 유동성 리스크 현황,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투자설명서·자산운용 보고서·펀드영업보고서에 기재

4 향후 추진계획

□ (법개정 사항) '21.4월까지 입법예고하고, 법개정 전이라도 일부 과제*는 행정지도 및 업계 자율추진 방식으로 우선시행하겠습니다.

* 시딩투자 실효성 제고(행정지도), 판매보수·수수료 선택 폭 확대(자율추진) 등

□ (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사항*) '21.3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.

* 성과보수펀드 활성화, 운용규제 개선, 외화표시 MMF 도입 등

□ (방안마련 및 업계 자율추진 사항) '21.2분기내 방안마련* 또는 시행**하겠습니다.

* 판매보수·수수료 체계개편 / ** 통합 자문플랫폼 도입 등

※ 별첨 : 「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」 상세내용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ETF(Exchange Traded Fund,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) : 특정자산의 가격 또는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
- MMF(Money Market Fund,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) : 펀드 재산을 단기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,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펀드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